<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 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 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 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 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 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0503



국제표준금거래소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21.02.24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4.09.20

isg@goodgold.co.kr goodgold.co.kr

[국제표준금거래소]

정 보 공 개 서

[(주)국제표준금거래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주)국제표준금거래소]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 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 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 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 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부산시 사상구 광장로 40, 2층(괘법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51-325-4989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51-325-4989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 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국제표준금거래소	소 부산시 사상구 광장로 40, 2층(괘법동)							
(주)국제표준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금거래소	2020년12월24일	2021년01월01일	김현재 051-325-4989						
	법인등록번호	180111-1332062	사업기	다등록번호	357-81-0220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국제표준	부산시	사상구 광장로 40,	2층(괘법동)				
사내이사	김현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금거래소	김현재	051-325-498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국제표준	부산시	사상구 광장로 40,	2층(괘법동)				
감사	김학덕	김학덕 금거래소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051-325-4989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국제표준금거래소]라고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국제표준금거래소										
상 호	국제표준금거래소 OO점										
상표(서비스표)	국제표준금거래소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2021	698,018	475,031	222,987	8,706,042	16,127	22,987
2022	719,684	433,459	286,224	6,057,992	63,627	63,237
2023	1,189,291	772,258	417,033	17,670,268	137,464	130,808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기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듬	한 역기	기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김현재	대표	2021.11.09~현재	대표이사	가맹사업전반						
관련임원	김학덕	감사	2021.01.21~현재	감사	업무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11	상근	비상근	4 5T(0)					
2023년 12월 31일	2	0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국제표준금거래소 International standard sold	상표권 사용대가	2024.01.18	4021424520000	(주)국제표준 금거래소	2034.01.18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Ⅲ. 가맹본부의 [국제표준금거래소] 가맹사업 현황

1. [국제표준금거래소]를 시작한 날 : 2021년03월01일

2. [국제표준금거래소]의 연혁

가맹본· 상호	부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국제표	Ŧ준	국제표준	배유주	2021.03.01.~2021.11.08	부산시 사상구 광장로 40,
금거래:	소	금거래소	'M\\\\\\\\\\\\\\\\\\\\\\\\\\\\\\\\\\\\	2021.03.01.~2021.11.00	2층(괘법동)
(주)국제표	Ŧ준	국제표준	김현재	2021.11.09~현재	부산시 사상구 광장로 40,
금거래:	소	금거래소	김연제	2021.11.09~ 연재	2층(괘법동)

3.[국제표준금거래소]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국제표준금거래소	기타 도소매	귀금속거래 서비스업 및			
	기디 포포메	금거래중개업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말 영업중인 [국제표준금거래소]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단위: 개)

지역		2021.12.3 ⁻	1	2022.12.31			2023.12.31		
~ ¬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8	17	1	15	15	1	21	20	1
서울	1	1	0	1	1	0	2	2	0
부산	7	6	1	6	5	1	6	5	1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3	3	0	3	3	0	5	5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1	1	0	1	1	0	1	1	0
경기	0	0	0	1	1	0	2	2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1	1	0	1	1	0	2	2	0
충남	1	1	0	1	1	0	1	1	0
전북	1	1	0	1	1	0	1	1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3	3	0	1	1	0	1	1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최근 3년간 [국제표준금거래소]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0	17	-	-	-	17
2022	17	1	3	0	0	15
2023	15	5	0	0	1	20

6. [국제표준금거래소]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2023년 가	맹점사업자의	이 여가 평규	ᄓᄜᅔᅅ		비고
지역	2023년말 가맹점 수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전체	20	334,670	12,934	1,753,819	87,691	27,936	698	15곳
서울	2	해당없음	-	-	-	-	-	
부산	5	447,188	22,585	1,753,819	87,691	33,722	2,108	5곳
대구	0	-	-	-	-	-	-	
인천	0	-	-	-	-	-	-	
광주	0	-	-	-	-	-	-	
대전	5	해당없음	-	-	-	-	-	5곳미만
울산	0	-	-	-	-	-	-	
세종	1	해당없음	-	-	-	-	-	5곳미만
경기	2	해당없음	-	-	-	-	-	5곳미만
강원	0	-	-	-	-	-	-	
충북	2	해당없음	-	-	-	-	-	5곳미만
충남	1	해당없음	-	-	-	-	-	5곳미만
전북	1	해당없음	-	-	-	-	-	5곳미만
전남	0	-	-	-	-	-	-	
경북	0	-	-	-	-	-	-	
경남	1	해당없음	-	-	-	-	-	5곳미만
제주	0	-	-	-	-	-	-	
		6개월이상 영역	업중인 167	개 가맹점으	로 계산, 가'	맹점포스 기	기준	

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8. [국제표준금거래소]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0	759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국제표준금거래소]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광고선전비로 5,77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사업부	부산시 사상구 새벽로 223	051-325-700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신한은행에 가맹계약 체결 후 1일내에 예치신청 하여 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신한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 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국제표준금거래소" 예치계좌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신한은행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문의 전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 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국제표준금거래소]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주)국제표준금거래소	예치	
보증금	(주)국제표준금거래소	예치	
기타 비용	(주)국제표준금거래소	예치하지 않음	
초도물품비	(주)국제표준금거래소	예치하지 않음	
필수공급물품	(주)국제표준금거래소	예치하지 않음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6,500				
가맹비 (가입비)	11,000	계약 체결일의 그 다음날까지 예치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름		
최초교육비	5,500	계약 체결일의 그 다음날까지 예치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름	이미 교육받은 부분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0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가맹계약이행보증금	20,000	계약 체결의 그 다음날까지 예치	가맹금 미지급 등	부가세 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리	ŀ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	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과 같습니다.

110101 01101010101	
구분	금액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36,500
가입비	11,000
교육비	5,500
가맹계약이행보증금	20,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43,000	5,720			약25평(83m²)
인테리어	미정	55,000	2,200	공사시작 3일전	공급전 취소	평당 220만원
간판, 사인	미정	11,000	440	공사시작 3일전	공사전계약취소	
가구 및 의탁자	미정	22,000	880	주문 3일전	작업전 계약취소	
초도물품	가맹본부	55,000	2,200	주문 3일전	작업전 계약취소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가맹계약시 제공되는 실제 견적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별도비용: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 공사, 어닝,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당사의 설계 및 인테리어노하우제공의 대가로 평당 금20만원(VAT별도)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이전에 지급하여야 합 니다.
- □ 약 83m²(실평수 약25평) 미만의 가맹점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최소 약25평 상당의 설비가 필 요하므로 약25평에 해당하는 설비 비용이 발생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	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주 체 : 가맹점희망자 지 원 : 당사 점포개발팀 (051-325-4989)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 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및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만20세 이상을 원칙으로 함	
종업원	제한 없음	만18세 이상을 원칙으로 함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8) 한편, 귀하는 당사에 가맹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1-1-1 01	3E 117C T	에프 기타리	EL -105	1 6 4 4 4 4	1 1-1•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부가세 별도)
신문, 라디오 TV 광고	(주)국제표 준금거래소	가 맹 본 부 가 50%/가맹점사업 자가 50%를 균 분함.	광고시행 전월 말일 까지 지급	광고 미시행	광고시행 후	광고행사 시, 지급
수시교육훈련비	(주)국제표 준금거래소	실비	교육 실시 2일 이전	교육 미실행	교육실시 후	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미정	실비	간판 변경 전 3일 이내	간판 설치 전3일 이내 취소	취소기한 경과	부득이한 경우 변경 될 수 있으며 교체 비용은 당사자의 귀 책사유 등을 고려하 여 협의 결정
정기납입금 (로열티)	(주)국제표 준금거래소	금23만원	익월 5일	기간도래한 부 분은 반환불가	소급하여 반환하지 않음	-
매장영업관리	(주)국제표 준금거래소	금114만원	익월 5일	기간도래한 부 분은 반환불가	소급하여 반환하지 않음	인건비,물류비,보 안관리비 등
점포환경 개선비용	미정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3일전	공사 전 계약취소	취소기한 경과	VII 기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 한 지원 - 참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분담금	-	-	-	-	-	해당 없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2%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체대금의 채권상환은 비용, 이자, 선발생채권 순으로 상계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가맹점과 가맹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재제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주1별 1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월 1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갱신가맹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 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 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 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 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 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

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국제표준금거래소]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국제 표준금거래소]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와 계약보증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국제표준금거래소]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국제표준금거래소]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ㆍ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골드바		1회 위반: 구두 경고				
실버바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 또는 영업 할 수 없음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기타 귀금속목걸이, 귀걸이, 팔찌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이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지정된 골드바					
지정된 실버바	시세	가맹본부의 공문발송 등			
기타 귀금속(목걸이, 귀걸이, 팔찌)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 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이치 어조 버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귀금속거래 서비스업 및 금거래중개업	국제표준금거래소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변경가능 여부	변경 사유
거리기준	반경500m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가맹계약 중 불가능	-

- ※ 단,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쇼핑몰 등)의 경우에는 일반 매장(로드매장)의 영업지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 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영업지역은 가맹계약서에 별첨하는 영업지역을 우선으로 합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영업시역을 압리적으로 소설	8일 수 있습니다. 구세적인 절시	r는 나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국제표준

금거래소]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국제표준금거래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기타 온라인
2023	95%	5%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국제표준금거래소]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 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 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갱신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계약조문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6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 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 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36조
4.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6조
5. [국제표준금거래소]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6조
6.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6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	가맹계약을	해지할 =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OH	바저이	 계약	ᇸᅚ	110	
2	<u> </u>	. /TI `	ᄱᄭ	ᄭᅲ	

관련 계약조문

1. 당사에 지급할 공급품 대금 및 기타 채무의 미지급금이 거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31조 제1항
2. 기업로고나 브랜드 로고를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지 않거나 변경하는 경우와 당사의 상호, 당사가 사용할 것을 공지한 상호, 당사가 사용하였던 상호를 당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	제31조 제1항
3. 당사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기업 로고 및 브랜드 로 고를 변경·폐지하였을 때, 기존의 기업 로고 및 브랜드 로고를 계속해서 사용하 는 경우	제31조 제1항
4 판매에 필요하고 청결한 점포를 위해 인테리어·설비의 내구연한 만료시점에, 객관적 근거에 의한 필요성 판단 시 이전이라도 점포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교체 보수의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31조 제1항
5.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동의 없이 월간 3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한 경우	제31조 제1항
6. 매뉴얼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당사 수퍼바이저의 가맹점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제31조 제1항
7. 브랜드의 통일성과 제품의 품질을 보호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가맹점 위생과 제품 품질의 표준 기준을 엄격히 준수 할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 제1항
8.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 비밀을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당 사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와 고객정보를 고객과의 계약내용 또는 법령의 허 용범위 이외로 사용하거나,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제31조 제1항
9.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매뉴얼에 따라 인테리어를 하지 않거나, 감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31조 제1항
10. 가맹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행하는 경우	제31조 제1항
11.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판촉활동에 동참을 거부하거나 당사와 합의한 판촉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1조 제1항
12.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해진 공통제품 외에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31조 제1항
13. 고객의 컴플레인 발생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와 협의 없이 판매가격을 정하여 고객에게 반복적인 컴플레인이 제기되는 경우	제31조 제1항
14 '을'이 실제 매출 내용을 '갑'에게 보고를 누락하거나 은폐한 경우 등 기타 가맹계약 시에 협의한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31조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1조2항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31조2항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1조2항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31조2항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 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2항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 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2항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1조2항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31조2항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1조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 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 후 3개월 내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본부에 서면통지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대리행사여부 통지	
업무위탁	본부 승인 시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업무위탁 여부 통지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 지역 내에서 귀하가 [국제표준금거래소]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귀금속거래 서비스업 및 금거래중개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국제표준금거래소]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제한 없음	가맹점의 영업일수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특별한 사유로 7일 이상 휴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맹계약서 제2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딤				비고	
운영능력(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운영 능력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3회/1년	SV팀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3회/1년	SV팀		
매장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3회/1년	SV팀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국제표준금거래소]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 8	고니그 서건	부	담비율	HEL 정취	ul ¬
구분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전국적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50%	50% 전체가맹점이 균분함	전체 광고 및 판촉계획 공고(행사의 명칭/실시기간/분담비율/분담한도 등을 제시)	인터넷,신문, TV
선제 8시 (인터넷,신문 , TV 라디오)	L터넷,신문 , TV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 가맹점의 광고 등 참여 여부 결정(광고의 경우 가맹점 50%이상, 판촉의 경우 가맹점70% 이상 동의)	또는 라디오 광 고에 한함
개별 행사	;	가맹점사업주	부담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월의 모든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액을 균분하여 산정합니다. 지역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 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광고 및 판촉활동에 대해 가맹본부에 1개월전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 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가맹계약서 제34조 참고)
-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동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영업행위로 '국제표준금거래소'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해당 손해액을 청구하거나 위약금으로 금1억원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제5조(비밀유지 의무), 가맹계약기간중에 제12조(동종영업 금지의무 및 자점매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금일억원(₩10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상표권 침해종료일까지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일 당 금오십만원씩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 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합니다.
- (2) 위약금에 관한 사항(가맹계약서 제35조 참고)

아래 각호의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천만원을 가맹본부에 위약금으로 하고, 손해액이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동 계약기간 내에 가맹본부와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한 경우
- ② 가맹점사업자가 양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가맹본부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④ 가맹점사업자의 부도 또는 범죄행위 등으로 "국제표준금거래소"의 명예나 신용을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부가세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p.11~p.12참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해당 금융기관에 가맹금 예치	D-29(1일)	p.11~p.12참고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선택)	- 공사 실시	D-24~5(20일)	n 11n 12朴 ユ	
장비 및 초도물품	- 시설장비 및 초도물품 공급	D-7~4(3일)	p.11~p.12참고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 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비용비율	o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처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촉진, 고객관리, 위생 관리, 교육훈련, 회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 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 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 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 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부담	문의: 가맹팀
가맹점 사업자	촉진, 고객관리, 위생 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	등 포한)를 가맹적사업자에게 제시 → 경	(기당금에 포 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 을 초과한 부	문의: 가맹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국제표준금거래소]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때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국제표준금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 영업 중 인지해야할 사항 ○ 프로그램의 관리법 신규 교육 ○ 가맹점관리 방법 ○ 창업에 대한 마인드교육 ○ 본사규정 및 방향		실습 및 점포 관리지도	가맹점 오픈전	필수 교육
보수 교육	∘ 가격변동 및 규정변경 시 ∘점주 집체교육의 필요성 시	본사교육장 집체교육	반기별 및 필요시	매년 이수 필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국제표준금거래소]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14일(소요예정임)	5,5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1일(소요예정임)	실비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25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부산	사상직영점	부산시 사상구 광장로 40, 2층(괘법동)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년(24개월)	2021.01.01.~2023.12.31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322,628천원	현금 및 카드매출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 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balancebrain.c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 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근 10개 국제표준금거래소 가맹점리스트]

지역	점포명	경영주명	전화	주소

[2023년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023년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022년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022년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021년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021년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